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1
----------	-----

2011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4월 11일, 장정숙의원외 29명
- 나. 회부일자 : 2011년 4월 12일 회부
- 다. 상정결과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년 6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정숙의원)

가. 제안이유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설립 목적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예술을 위한 공익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 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면의 경우, 종전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하던 정관의 규정을 수정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조례로 규정한 것이며,

둘째, 법인의 정관의 변경 방식을 종전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정관변경과 관련된 이사회의 권한을 확실하게 명문화하였으며,

셋째,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한 것임.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사장 추천 1명, 노조대표자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새로이 사장을 임면함에 있어서 전임 사장의 추천으로 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와 법인의 노조대표자가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이 경영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임.
- 특히 노조대표자의 추천위원회 추천과 관련된 법률자문에서는 집행부가 의뢰한 노무법인에서는 인사결정권은 노조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며 기업경영과 관련된 인사·경영권은 세종문화회관의 권한이므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의뢰한 변호사의 경우, 세종문화회관의 근로자도 법인의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며 임원선임에 근로자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개진함. 이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의 법률자문이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임원의 임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는 사항만 명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종문화회관의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노조대표자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정관과 조례 및 「민법」 과의 관계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종전 규정을 안 제6조제2항에서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민법」 제45조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인지의 여부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핵심 기능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새로운 정관 변경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관 변경방법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민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의회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의견이며,
- 이와 반대로 재단법인 이사의 임면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모법인 「민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집행부의 법률자문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

□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안 제 9 조 제 3 항 에 서 는 추천 위원 회 가 재 적 위 원 과 반 수 의 출 석 과 출 석 위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하 는 것 으 로 규 정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 안건이 매우 중대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바, 보다 많은 추천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의견으로 사료됨.

□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안 제 9 조 제 2 항 “ 위 원 은 문 화 예 술 계 에 관 한 식 견 과 덕 망 이 있 는 각 계 인 사 이 어 야 하 며 , 법 인 의 임 · 직 원 , 서 울 시 공 무 원 및 시 의 회 의 원 은 추천 위원 회 위 원 이 될 수 없 다 . ”

-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계 전문지식 외에도 전문경영인도 요구되는 조직이므로 경영전문가나 공인 회계사 등도 위원자격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주장인 바, 이는 문화예술기관 CEO의 임명이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주장임. 위원자격을 한정하여 전문화하는 것과 확장하여 규정하는 것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공무원의 파견 규정 삭제

“제 17 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30 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

- 공무원 파견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3(공무원의 파견·겸임) 및 제77조의 7(준용규정)에 의하여 출연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원의 파견은 가능함.
- 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법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해당 법인이 문제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 파견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조례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공무원의 파견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는 조문임.

■ 종합 검토 의견

- 종전에 시장이 사장과 임원을 선임하도록 했던 규정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한 것은 세종문화회관의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임면시 검증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와 추천인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정관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출연기관 임원의 임면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떠안기보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검증된 임원의 임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공공성 및 전문성의 발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세종문화회관이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에 준하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과 현재와 같이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경우, 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보은인사’나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인의 임원 임명으로 인한 부실경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임원추천위원회와 같은 견제장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수정안의 요지 : 시장이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조문의 내용 중 “임면”을 “임명”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리함.

9.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 동 조례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 출연기관의 임원의 임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와 다른 규정이 있어 부동의함.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91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1년 6월 3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 이유

- 시장이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중 “임면”을 “임명”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골자

-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임면”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임명”으로 용어를 수정함 (안 제7조제2항).
- 시장이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고 법인의 사장이 추천하는 1명과 법인의 노조대표자가 추천하는 1명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2항).
- 의결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안 제9조제3항).
-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6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제1항제1호와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3명

-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 법인의 임·직원,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u>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u> <u>관설립·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p> <p>제4조 (생략)</p> <p>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략)</p> <p>② 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p> <p>제6조(정관) ①(생략)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u> <u>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u>서울특별시 재단법인</u> <u>세종문화회관을</u>.....</p> <p>제2조(적용범위) <u>서울특별시</u> <u>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u> <u>법인"이라 한다)의</u>.....<u>민</u> <u>법</u>.....<u>따른다.</u></p> <p>제3조(설립) 「<u>민법</u>」 <u>의</u>.....</p> <p>제4조(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u>범위에서</u></p> <p>제6조(정관) ①(현행과 같 음) ②.....<u>이사회</u> <u>의 의결을 거쳐</u></p>	<p>(개정안과 같음)</p> <p>제1조(목적)(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적용범위)(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설립)(개정안과 같음)</p> <p>제4조(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정관)(개정안과 같음)</p>

제7조(임원) ① 법인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사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사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의결사항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제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2명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3명
3. 법인의 사장이 추천하는 1명
4. 법인의 노조대표자가 추천하는 1명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개정안과 같음)

제9조(추천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1. 시장이 추천하는 3명
2. (개정안과 같음)

3. <삭제>

4. <삭제>

	<p>② <u>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이어야 하며, 법인의 임·직원,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p> <p>③ <u>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면되는 때까지 존속한다.</u></p> <p>④ <u>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u></p> <p>⑤ <u>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u></p> <p>⑥ <u>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u></p>	<p>② <u>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 법인의 임·직원,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p> <p>③ <u>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u></p> <p>④~⑤(개정안과 같음)</p> <p>⑥ <u>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u></p>
<p><u>제8조(이사회)</u>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u>제10조(이사회)</u> ① 두 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p>	<p>제10조(이사회) (개정안과 같음)</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9조(사장 및 감사)</u></p> <p>① <u>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u></p> <p>② <u>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p>	<p><u>제9조 <삭제></u></p>	<p>(개정안과 같음)</p>
<p><u>제10조(직원)</u>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p>	<p><u>제11조(직원)</u> (현행과 같음)</p>	<p>제11조(직원)(개정안과 같음)</p>

제11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경영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기관 등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필

제12조(운영재원 등)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15조(결산서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고 및 검사) (현행과 같음)

제17조(경영평가)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재원 등)(개정안과 같음)

제13조(사업연도)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결산서의 제출) (개정안과 같음)

제16조(보고 및 검사) (개정안과 같음)

제17조(경영평가) (개정안과 같음)

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사상·예산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경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삭제>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한다)을”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로 한다.

제2조 중 “법인의”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의”로, “민법”을
“「민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민법의”를 “「민법」 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전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하 “사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
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3명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3명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 법인의 임·직원,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각각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u></p>	<p><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u>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u>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u>을.....</p>
<p>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의「<u>민법</u>」.....<u>따른다</u>.</p>
<p>제3조(설립) 법인은 <u>민법</u>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p>	<p>제3조(설립) 「<u>민법</u>」의</p>
<p>제4조 (생략)</p>	<p>제4조(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략)</p> <p>② 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u>범위안</u>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p>	<p>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u>범위에서</u></p>
<p>제6조(정관) ①(생략)</p> <p>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사전에</u>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6조(정관) ①(현행과 같음)</p> <p>② <u>이사회의 의결을 거쳐</u></p>
<p>제7조(임원) ① 법인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하 "사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③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p>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하 "사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신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의 결사항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제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3명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3명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 법인의 임·직원,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제9조(사장 및 감사)

①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

제10조(이사회) ①

.....

 두
 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 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경영평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기관 등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사상·예산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경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재원 등)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15조(결산서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고 및 검사) (현행과 같음)

제17조(경영평가) (현행과 같음)

<삭제>